

의안번호	2209246
의 퇴 인	이헌승 의원
회 답 일	2025. 6. 9.
추 계 번호	25B18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16조의3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제2항) 1.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지원 사업 2. 퇴역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육·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무규정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함(제3항)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6조의2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의3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	

2. 상세 사유

□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관리(안 제16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¹⁾이 적절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봉사동물은 장애인 보조견, 국방부·경찰청 등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활동 중인 봉사견은 약 1,100마리로 추정됨

[표 1] 봉사동물 개요

- (개념) '봉사동물'이란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
- * ①장애인 보조견, ②국방부·농식품부·관세청·국토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③소방청에서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구조견 등
- (현황) '24년 기준 활동 중인 봉사견은 약 1,100마리이며, 매년 약 150마리(자연은퇴 90, 훈련탈락 60)의 은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2025.2.) 중 발췌

- 봉사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²⁾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하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동물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그 대상은 주로 장애인 보조견의 소유자등이 될 것으로 보임

-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 가. 국토교통부
 - 나. 경찰청
 - 다. 해양경찰청
 5.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

[표 2] 봉사동물 운용 기관 별 운용규정

운용기관	운용규정
국방부	「군견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
관세청	「탐지견훈련평가 및 운용에 관한 훈령」, 「탐지견 처분 및 절차에 관한 내규」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 폭발물 탐지견 운영 규칙」
경찰청	「경찰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업무 처리지침」
소방청	「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삼성화재안내견학교 및 장애인도우미견협회를 전문훈련기관³⁾으로 지정하고 있고, 2024년 말 기준으로 유효한 장애인 보조견표지⁴⁾ 수는 총 247건이며, 이 중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은 152마리로 확인됨

[표 3] '24년말 기준 활동 중인 장애인 보조견 수

(단위: 마리)

구분	계	시각	청각	지체	치료	뇌전증
계	152	91	37	16	5	3
삼성화재안내견학교	85	85	—	—	—	—
장애인도우미견협회	67	6	37	16	5	3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조견 관련 예산 사업은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인 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보조견 양성 등을 위한 비

3)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에게 발급

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장애인 보조견 양육비 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없는 상태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삼성화재안내견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안내견 예방접종비 등 병원비를 안내견 소유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4]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현황('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 예산지원액	비고
삼성화재안내견학교	-	-
장애인도우미견협회	146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법 및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조사된 반려견 양육비용은 마리당 월 24.03만원(양육비 17.52만원, 병원비 6.51만원)임

□ 퇴역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6조의3 신설)

- 개정안은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센터의 소재지, 규모, 지

원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칭)은퇴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 중으로, 향후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센터의 업무,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됨

[표 5]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중 관련 사항

- (은퇴견 통합관리) 은퇴한 봉사견을 통합하여 보호·관리하고, 민간 입양을 추진하는 ‘(가칭)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추진(’27~)
 - 은퇴견을 위한 쉼터 공간을 마련,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입양을 추진하던 것에서 통합적으로 입양 정보 제공 및 입양자 선정·관리
 - * 은퇴견 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26) → 지역 선정 및 착공(’27) → 센터 운영(’28)
 - ** 국가봉사동물 은퇴견 입양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25~)
 - 적정 면적, 관리 인력, 건강관리 방안 등 은퇴견 복지를 고려한 시설 운영 및 관리 세 부기준 마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 (2025.2.) 중 발췌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